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건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953

발의연월일: 2025. 3. 14.

발 의 자 : 윤건영ㆍ박지원ㆍ이성윤

이기헌 · 신정훈 · 김영배

최기상 · 소병훈 · 이인영

민병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퇴직연금사 업자와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, 계약 방법을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에 한정하고 있습니다.

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재무건전 성 및 인적·물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가 체결하는 퇴직연금의 자산관리계약을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에 한정하고 있어, 퇴직연금사업 이 불가한 상황입니다.

이에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 계약방법에 공제계약을 추 가하여 퇴직연금제도 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, 기존 보험회사 등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을 개 선하고자 합니다(안 제29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2항 중 "피보험자 또는 수익자"를 "피보험자,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"로 "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"을 "보험계약, 공제계약 또는 신 탁계약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9조(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	제29조(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		
의 체결) ① (생 략)	의 체결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제1항	②		
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			
우에는 근로자 또는 가입자를	<u>刘</u> 보		
<u>피보험자 또는 수익자</u> 로 하여	험자,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	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<u>보험계약</u>	<u>보험계약, 공제</u>		
<u>또는 신탁계약</u> 의 방법으로 하여	계약 또는 신탁계약		
야 한다.			